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20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김주영 · 황명선 · 이기현
박균택 · 임호선 · 박수현
이학영 · 양문석 · 김형동
김태선 · 문정복 · 박 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한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정밀한 방재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재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상 예보이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기상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촘촘한 기상관측망,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 숙련된 예보관 중 특히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치예측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수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

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수치예측 기술은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우리나라 기상 및 지리적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AI 등 최신 기술 융합을 통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개선 및 활용·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하 “수치모델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치모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융합한 수치예측 기술 연구
2. 수치예측 기술 및 시스템 활용·보급에 관한 연구
3. 수치예측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력
4. 수치예측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치모델 전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상청장은 수치모델 전문기관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수치모델 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치모델 전문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치모델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5(수치예보시스템 개발</u> <u>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u> <u>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u> <u>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체</u> <u>계적인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u> <u>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u> <u>기관(이하 “수치모델 전문기관”</u> <u>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수치모델 전문기관은 다음</u> <u>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융합</u> <u>한 수치예측 기술 연구</u> <u>2. 수치예측 기술 및 시스템 활</u> <u>용 · 보급에 관한 연구</u> <u>3. 수치예측 관련 국제 공동연</u> <u>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u> <u>력</u> <u>4. 수치예측 분야 전문인력 양</u> <u>성을 위한 교육 · 훈련</u> <u>5.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u> <u>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u> <u>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u>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치모델 전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상청장은 수치모델 전문기관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수치모델 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치모델 전문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치모델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